

해양수산동향

Vol. 1203

2005. 12. 14

부연구위원

조정희

TEL

2105-2856

E-mail

jcho5901@kmi.re.kr

2005년 하반기 수산보조금 협상 동향 및 전망

01 2001년 11월 WTO 도하개발아젠다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23차례의 수산보조금 협상이 있었음. 특히 2006년도 하반기에만 4차례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협상내용이 과거에 비해 구체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임. 더욱이 지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홍콩각료선언문이 채택됨에 따라 WTO/DDA 협상 시한이 2006년 말로 결정됨. 따라서 2006년도 협상의 중요성이 배가되었다고 할 수 있음

02 2005년 6월 16일 착공된 인천대교 건설공사중의 통항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량통항선박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비상통신수단 확보, 교량순찰·안내선 운영, 기상·해상정보 제공, 교량통항안전협의회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03 제21차(9월) 협상에서는 피지 등 12개국이 약소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산보조금 규율의 특별대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음. 따라서 이를 계기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제22차(10월) 협상에서는 뉴질랜드가 어업기반시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로 허용 및 금지 보조금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어업비용절감 보조금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제23차(11월)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상관없이 소규모어업에 대한 특별대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브라질은 7월 제안서를 보완하여 보조금 협정 부속서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04 따라서 2005년도 하반기 수산보조금 협상내용을 볼 때, 2006년도 협상은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에 놓여있던 보조금 중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일정 수산보조금을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협정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견됨. 또한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주요 협상 주제별로 소규모 그룹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홍콩각료회의에서 WTO/DDA 협상시한 2006년 말로 결정

지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홍콩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비록 각료선언문 내용이 대다수 회원국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의 말대로 “2006년 말 협상타결을 위해 항해할 충분한 연료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05년 12월 말로 예정되었던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 시한이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2006년 말로 연장됨에 따라 내년도 협상의 중요성이 배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2005년도 하반기 협상동향을 살펴본 후, 2006년 협상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¹⁾

2005년도 하반기 동안 4차례 협상 열려

2001년 11월 WTO 도하개발아젠다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23차례의 수산보조금 협상이 있었다. 특히 2005년 하반기에만 4차례(7월, 9월, 10월, 11월)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협상내용이 과거에 비해 매우 구체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컨대 브라질은 지난 11월 개최된 제23차 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정문안을 제안서 형태로 제출함으로써 향후 Text-based 협상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대부분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2005년 하반기 협상의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어선건조 보조금을 차츰 축소 또는 없앨 계획이라 하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보조금의 경우 협상전략에 따라 이 항목에 포함되는 보조금의 종류가 변할 가능성이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보조금을 보는 시각에 각 국별로 차이가 있고, 수산업의 현실 또한 국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 IUU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제시

2005년 7월에 개최된 제20차 협상에서는 일본, 브라질 그리고 호주가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제안서는 지난 17차 협상에서 한·일·대만 3국이 금지보조금으로 예시한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관련내용을 담은 제안서로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미국, 호주, 노르웨이 등 피시프랜즈그룹(FFG)측은 WTO보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수산전문 국제기구가



1) 2005년도 상반기 수산보조금 협상 내용은 “2005년도 상반기 수산보조금 협상동향 및 전망, 「해양수산동향」, Vol. 1779, 2005년 7월 25일” 참조

IUU어업을 다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하면서도, IUU어업 규제만으로는 수산자원고갈 문제를 시정할 수 없으므로 WTO 협상에서 어획능력을 증강시키는 보조금의 전면 금지나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일본 제안서가 IUU어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2월 협상 이후 허용보조금 위주의 제안서들이 제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일본 제안서가 논의의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IUU어업을 금지보조금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브라질, 주요 협상 이슈에 대한 자국 입장 밝혀

브라질 제안서는 지난 제18차 협상시 제출된 문서를 비공식으로 재차 제출한 것으로서 Top-down에 기초한 포괄적인 수산보조금의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산보조금 특별규범을 내수면어업을 제외한 모든 잡는 어업에 적용시키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지/허용보조금 구분 및 예외적 허용 사례로 소규모·전통어업의 정의를 제시하고, 금지보조금 철폐기한을 선진수산국과 개도국의 경우 각각 3년과 5년으로 할 것도 주장했다. 개도국 특별대우(S&D)와 관련, 특정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경우에 따라 심각한 손상을 인정하여야 하며,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금지보조금을 10년간 조치가능으로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더욱 강화된 투명성 규정을 제시하였는데 자원상태, 적당 보조금액 등 상세한 정보의 통보를 의무화하되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금지보조금으로 추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시프렌즈 국가들은 브라질 제안서가 Top-down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제안서의 구조 및 내용이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금지/허용보조금 분류기준의 모호성, 예시된 금지목록의 협소성 등을 지적하였다. 호주는 전통적 어업의 정의가 모호하고 S&D박스가 WTO에 마이너스임을 지적하는 한편, WTO 대신 다른 국제기구가 규정한 IUU어업 규제의 정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EC(유럽공동체)는 개도국 S&D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동 제안서의 내용을 높이 평가하고 통보의무 도입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으나, 지역수산기구와의 연계나 소규모어업 및 어업의 위험상태 개념 등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과 대만은 소규모어업의 기준으로 사용한 250톤의 출처와 적절성에 대하여 질의하고, 특정 어선 또는 업체의 IUU어업 가담에 따라 해당국가의 전체 보조금을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도 브라질 제안서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기본적으로 개도국 S&D 부여에는 찬성하지만 경제적 개념인 S&D를 자원관리에 결부시키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각 회원국들은 브라질 제안서가 구조적으로 수산보조금 전반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각국이 이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자국의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동 제안서는 향후 협상의 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이 제안서에는 수산보조금 협상의 핵심 요소가 모두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각 요소에 대한 순차적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수산보조금 협상이 신속히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호주·에콰도르·뉴질랜드 3개국 공동제안서, 양식업 규제 주장

제20차 협상시 제출된 3국 공동제안서는 양식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잡는어업의 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양식업에 대해 특별규율을 하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자원 및 환경효과 측면에서 양식업이 잡는어업과 차별화되며, 기존 협정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으므로 특별규율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다만 호주의 남방참다랑어 축양 견제를 목적으로, 일본은 잡는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양식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자원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단 양식업 보조금의 자원왜곡과 무역왜곡 측면을 구분하여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양식업이 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양식업과 연관된 보조금 규제를 주장하는 호주 등 3개국 공동제안서가 제21차 협상에서 재차 논의되었다. 그러나 3개국의 기대와는 달리 회원국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EC, 중국 및 인도 3개국만이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3개국 역시 기존에 협상 중인 잡는어업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양식업에 대한 특별규율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급선회하였다. 따라서 양식업 특별규율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대하거나 아예 관심을 표명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논의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식업은 새로운 수산보조금 규율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피지 등 12개국, 약소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주장

제21차 협상에서는 호주 등 3개국 공동제안서 이외에 피지 등 12개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이 제안서는 기존의 신호등 방식이 자원왜곡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약소연안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즉, 협상과정에서 수산물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인한 보조금 유해 여부의 입증책임이 보조금 지급국가에게로 전환되거나 수산보조금에 대한 포괄적 금지방식이 채택되더라도 동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예외

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동 국가들에 대한 예외인정 항목으로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소규모/전통어업(small scale or artisanal fishery), 입어료(access fee), 재정지원(fiscal incentive)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들은 약소연안개도국의 식량안보, 어업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개도국 S&D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약소연안개도국을 포함해 모든 개도국에 대해 S&D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명했다. 페루가 개도국의 적용범위를 문제 삼은 것을 계기로 베네수엘라, 중국, 홍콩, 태국 등이 개도국 S&D의 범위를 모든 개도국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바베이도스 등 약소연안개도국은 동 제안서는 말 그대로 약소연안개도국의 S&D를 다룬 것이라면서 제안서 내용을 모든 개도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소규모 연안 국가의 수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나 식량안보 등을 감안해 S&D를 인정하되, 모든 개발도상국가가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극히 제한된 소규모 연안국가에 한정하여 자원고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또한 소규모 어업과 관련해서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신호등 방식에 의한 보조금 구분이 분쟁해결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는 그동안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산보조금 협상이 국제적 자원보전노력에 대하여 WTO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뉴질랜드, 어업기반시설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제시

뉴질랜드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22차 협상에서 어업기반 시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로 허용 혹은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유형에는 선박의 정박시설, 전채 및 양륙시설, 청소 및 소독, 수리, 저장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 어항시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 각 시설물은 특성에 따라 금지 혹은 허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 유형에는 어촌개발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 중 어업인에 대한 주택 지원, 어촌사회에 대한 교통지원 보조금 등을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 유형으로 가공시설이 포함되었는데, 가공공장 및 시설의 사용, 폐수처리시설, 위생시설, 세척, 포장, 냉장 및 냉동시설, 공판장, 경매장 등 시설지원은 금지보조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끼, 연료, 얼음 등과 같은 비용절감성 보조금을 'Operational Infrastructure'로 명명하고, 이러한 보조금 지급이 어업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과잉어획 및 과잉능력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자원보전 및 연구개발 목적의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였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뉴질랜드 제안서에 대해 어항시설과 연관된 어업 기반시설과 일반 기반시설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금지 혹은 허용에 대한 입장표명에 소극적이었다. 반면, 어촌개발 항목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어업가공시설의 경우,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잡는어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Operational infrastructure와 관련해서 일본과 미국은 기반시설이 유형의 구조물에 한정되므로 연료, 얼음 등의 제공을 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는 어업비용절감 보조금 항목(variable cost subsidy)에 대해서 사안별로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EC는 어업기반시설, 특히 어항시설과 가공시설은 Multi-product nature로 인해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모든 수산보조금의 문제는 어선척수와 어획량 규제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반 기반시설과 어업 기반시설간의 구분기준이 모호하며, 기반시설의 제공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이므로 양자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공시설이 어업자원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협상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협상범위를 잡는어업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브라질, 7월 제안서 보완하여 보조금 협정 부속서 형태로 다시 제출

대다수 회원국들은 브라질이 수산보조금 규범 초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역수산기구와의 업무연계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제안서에 포함된 수치의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노르웨이는 수산보조금 협상이 SCM협정의 하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WTO와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실제로 실행 가능할 해법을 촉구하였다. EC는 이러한 노르웨이의 발언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동 제안서가 Top-down approach에 기초한 점과, 복잡하여 실행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계 수산물 교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페루, 아이슬란드, 칠레, 미국 등 FFG 국가들도 동 제안서의 내용이 복잡하고 지역수산기구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적 논의를 희망했다. 대만과 일본은 브라질의 규범초안 제시가 시기상조이며, 기본적으로 동 제안서가 포괄적 금지원칙에 근거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무역왜곡 효과가 기존 SCM협정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동 제안서가 포괄적 금지원칙에 기초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기술적 세부논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운 수산보조금 규범초안을 제시한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내수면 어업, 양식업, 어업관리사업 등을 규범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 소규모어업 제안서 제출

우리나라는 제23차 협상에서 WTO 차원에서 소규모어업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동 제안서는 WTO 차원에서의 소규모어업을 정의하기 위해서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단순한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보호 및 조업안전 보호(사회적 기능), 그리고 전통문화의 유지·보호(문화적 기능) 측면에서 소규모어업 보조금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외에 우리나라는 제안서에서 경제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소규모어업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제안서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들은 복잡한 소규모어업에 대한 제안서를 내준 것에 대한 감사와 소규모어업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정 금지보조금 종류에 대한 합의 이루어

2005년 2월 이후 각국이 금지와 허용보조금 종류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상이 꽤 진전되고 있다. 기존의 SCM협정에서는 단지 2종류의 금지보조금만이 적시됐었지만, DDA협상 이후 지금까지 최소한 약 5~6개 항목의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데에 회원국들의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 외에도 양식어업이 새로운 보조금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잡는어업에 있어 자원고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만이 협상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뉴질랜드가 어항과 가공시설을 포함한 어업기반시설과 연관된 보조금을 금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협상대상으로 떠올랐다. 더욱이 어업비용을 절감시키는 보조금을 철폐하자는 주장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수산보조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업기반시설과 어업비용절감 보조금이 새로운 보조금 협상대상에 포함되었다.

개도국의 S&D 및 소규모어업 정의에 대한 논란 계속

피지가 약소연안개도국에 대한 S&D 관련 제안서를 제출한 것을 기점으로 개도국 S&D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피지의 제안서는 약소연안국가에 대해서만 특별한 S&D 적용을 표명했지만 태국, 중국 등 여타 개도국도 자국에 대한 S&D 적용을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미국과 EC 등 선진국들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자원고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범위, 적용항목 등에 대한 향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회원국들은 전통어업과 소규모어업에 대하여 수산보조금

의 일반적인 예외허용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나, 개념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규모어업 제안서와 관련해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소규모어업에 관한 보조금이 경제발달 정도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향후 소규모어업 정의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됨에 따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므로 우리나라 자체 기준에 대한 내부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정문 작업이 개시될 예정

수산보조금의 경우 홍콩각료회의에서 당초 제시된 규범의장 초안이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에 놓여 있던 보조금 중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일정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협정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2006년에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욱이 FFG 국가들이 2006년부터 주요 협상주제별 소규모 그룹회의 개최를 희망하고 있어 전체 협상과 병행하여 관심국가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그룹회의가 개최되어 협상진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각 세부 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립, 예를 들면 금지 보조금의 종류, 유예기간, 개도국 S&D 등에 대한 입장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6년도 협상을 대비하여 개별 수산보조금에 대한 협상동향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산보조금 모두가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수산보조금 성격에 따라 세부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최근의 협상동향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국내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보조금 철폐 혹은 규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만이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외부적인 도전을 우리 수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